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진호

전화 062-231-4332 / 팩스 0502-193-7661

보도자료

2021. 6. 9.(수)

제 목

공공기관의 LED조명등, 태양광 사업 수주비리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I. 피고인 [구속 4명, 불구속 5명]

- ㄱ○○ [71세, A社 운영, 前 B公社 사장] - 구속
- ㄴ○○ [58세, A社 관계자] - 구속
- ㄷ○○ [45세, C法人 본부장] - 구속
- ㄹ○○ [69세, D社 고문이사] - 구속
- ㅁ○○ [44세, E社 연구소장]
- ㅂ○○ [72세, F社 운영] 등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

II. 공소사실 요지

가. ○○市 등 LED가로등 사업 관련 범행

- (ㄱ○○, ㄴ○○) 공모하여, '19. 2~8. ○○市 LED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참가 업체 G社, E社와 각각 수주 청탁·알선 대가 지급 약속, '20. 7. 수주업체 E社로부터 컨설팅비용을 가장하여 6억 2,254만 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 등]
- (ㄷ○○) '19. 7. ~ '20. 12. ○○市, △△市 LED가로등 사업의 입찰사무를 위탁받은 C法人 본부장으로서 ㄴ○○, ㅁ○○으로부터 합계 7,500만 원 뇌물수수 [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]
- (ㄴ○○, ㅁ○○) 위 ㄷ○○에게 각자 뇌물 5,500만 원, 2,000만 원 공여 [뇌물공여 등]

나. B公社의 태양광 등 사업 관련 범행

- (ㄱ○○) '18. 5~9.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ㅂ○○ 등 4명으로부터 B公社의 저수지 태양광시설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2,000만 원 수수 [뇌물수수]
- (ㅂ○○ 등 4명, ㄹ○○) '18. 5~9. ㅂ○○ 등 4명은 각자 ㄱ○○에게 각각 현금 500만 원 공여, ㄹ○○은 이를 알선하고 소개비 1,500만 원 수수 [뇌물공여, 변호사법위반]
- (ㄹ○○) '18. 10. ㄱ○○에게 청탁하여 B公社 소유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7,000만 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]

III. 사건경과

- 2020. 12. 수사착수
- 2021. 4. 12. ○○市, C법인 등 압수수색
- 2021. 5~6. 구속피고인 기소(5/11 나○○, 5/24 다○○, 6/3 기○○, 6/9 르○○)
- 2021. 6. 9. 구속피고인 추가기소, 나머지 피고인 불구속기소 등 처분
※ 모○○ 불구속구공판, 바○○ 등 4명 약식명령청구